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83호)

제안 설명



2021. 12. 1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문장길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2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출산(低出產)’의 사전적 의미는 ‘아이를 적게 낳음’을 뜻하고, ‘저출생(低出生)’은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적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인구감소의 원인과 해결책 마련에 있어서 여성을 객체로 평가하는 등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저출산’을 출생인구 감소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바로잡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